

2026년 경북형 도심항공교통 산업육성 및 활성화 사업 수혜기업 모집 통합공고

경상북도와 (재)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경북형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 일환으로 도내 도심항공교통 분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‘산·학·연 컨소시엄 R&D 기획’ 수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.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02월 23일

(재)경북테크노파크원장

I. 지원내용

1. 지원분야 : 도심항공교통* 관련 정부부처 R&D공모과제 지원 신청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소시엄 구성 및 선행연구 지원

* 도심항공교통분야 : UAM, 항공관제, 버티포트, 운항/체계, 항법/감시, 항공교통서비스 플랫폼, 관련 SW 등에 관련된 전반적인 산업분야

구분	세부내용	지원 규모	지원 금액
산학연 컨소시엄 R&D 기획	✓ 산학연 컨소시엄 R&D 기획 및 선행연구지원 최종 산출물 ◦ 정부부처 R&D 공모를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1식 ◦ 정부부처 R&D 공모를 위한 연구결과물 1식 이상	2개 컨소시엄	120,000 천원 이내 (컨소시엄 당)

※ 1개의 컨소시엄은 총 3~5개 사(주관, 참여 포함)로 구성하며, 주관기관은 경북 지역 중소기업이 담당함. 단, 참여기관/기업은 경북 외 지역 가능하고 산·학·연 분야 중 2개 이상 분야로 구성하여야 함(동일 분야로만 구성 시 지원 불가)

※ 사업비는 인건비, 간접비, 연구수당 계상불가, 재료비, 연구활동비에 한정하여 사업비 책정

※ 지원금은 보증보험증권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선지급하고 추후 사업종료 후 정산

※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2. 기업부담금 : 기업지원금의 **10% 이상**(현금 매칭)(기관은 기업부담금 없음)
3. 사업비환수 : 지원목적 외 사용, 지원기업 선정 시 조건 및 사업계획 불이행의 경우 사업비 환수
4. 사업수행기간 : 2026. 04. ~ 2027. 3.(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5. 지원방향
 - 가. 도심항공교통 관련 컨소시엄 구성 및 선행연구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기반 마련
 - 나. 도심항공교통 및 연구개발기획 관련 전문가를 매칭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내 중소기업 기획 역량강화 지원
6. 지원절차



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II. 지원자격 ※ 주관기관

1. 공고일 기준 **본사 또는 공장(연구소 포함)**이 경북도 내 소재한 도심항공 교통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 희망 중소기업
※ 경북 지역 외 소재기업의 경우,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기간 내 경북도내 기업 이전 필요(본사, 공장, 연구소) → 지원신청 시 기업 이전 협약서 제출 및 최종 결과 평가 시 기업이전 확인 서류(사업자등록증 등) 제출 必
2.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3. **2027년 3월까지** 지원사업 완료 가능한 대상 지원
4. 지원 대상 선정 후 현장방문 및 실태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, 점검결과 진행상황 등이 현저히 불량하여 기간 내 과제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또는 사업계획 기재 내용에 허위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별도 자체심의를 통해 지원 제외 여부 결정
5. 본 공고 내용 외에 사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 안내에 의해 진행

III. 지원제외 대상

1. 본사업 지원 적합성 관련
 - 가. 본 사업과 동일한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관련 사업에서 지원 받았거나, 기 지원된 과제와 중복이 확인될 경우
 - 나. 지원분야 및 지원자격이 상이하거나 해당이 없는 경우
 - 다. 접수 마감일 기준, 정부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사업 참여 제재 중인 경우
 - 라. 접수 마감일 기준,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
 - 마. 제조업이 없는 단순 유통업, 간이과세자는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 - 바. 접수기간 내에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, 신청서 이외의 양식으로 제출하는 경우
 - 사.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 2. 재무 건정성 관련
 - 가.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1,000% 이상 시 제외 (접수 마감일 기준)
 - 나. 국세·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- 다.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 또는 부적정”인 경우
- ※ 자세한 사항은 VI.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참고

V. 평가방법 및 제출서류

1. (사전검토/서류확인)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과제의 중복성, 참여제한 여부 등 사전검토, 사전지원 제외대상 항목 해당 시 평가에서 제외함
2. (발표평가)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기업의 역량, 사업화 능력, 사업계획의 적정성, 기대효과 등에 대해 평가
 - 평가 항목(발표평가)

※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

평가항목	평가내용	평가지표	배점
사업 이해도 및 목표의 명확성	사업 추진 목적의 부합성	◦ 정부부처 R&D 공모과제의 부합성	10
		◦ 국내 도심항공교통 산업 활성화 전략과의 연계성	10
컨소시엄 구성 및 역량	추진체계 및 연구능력	◦ 주관기관(경북 중소기업) 중점의 추진 방향성	10
		◦ 컨소시엄 추진체계의 적정성	10
		◦ 총괄책임자 및 참여 인력의 해당 분야 기술개발 실적 및 전문성	10
기술성 및 공모 가능성	기술의 차별성 및 수주 전략	◦ 제안 기술의 우수성 및 타 기술 대비 차별성	10
		◦ 대상 정부 과제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준비 및 전략의 구체성	15
계획의 적정성 및 파급효과	추진전략 및 기대효과	◦ 기획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(사업비 내역, 주관-참여 간 예산 분배 등)	10
		◦ 개발 성공 시 지역 내 고용 창출, 시장 점유율 확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	5
지역기여도	지역 산업 발전 기여	◦ 주관기관의 지역 내 생산액, 고용 실적 및 향후 지역사회 기여 가능성	10
소 계			100

- 신청과제 평가 후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을 “지원가능과제”로 선정하며, 7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해당 과제의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지원 범위 내에서 순위별로 선정
 -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
 - 적합한 기업이 없거나 미달되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
3. (평가위원 구성) 산·학·연 외부전문가 5명 이내
 4. (최종결과평가) 수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면

또는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최종결과를 판정함

※ 평가등급 : 최우수, 보통, 성실수행, 불성실수행(최종평가 위원회 일정은 향후 공지)
가.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비“인정” 또는 “환수”(전액 또는 일부)

나. 최종 결과평가 항목

※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

평가 항목	세부 항목	평가지표	배점	
목표달성 및 성과	정량목표 달성 여부	정부부처(국토부, 산업부 등)에 제출 가능한 수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선행연구 결과물 도출 여부	15	40
	성과도출의 적절성	선행연구 및 기획을 통해 도출된 기술 로드맵, 개념설계 등 결과물의 품질	25	
기획의 완성도	연구개발계획서 완성도	전문가 컨설팅 반영 및 정부 과제 선정 가능성이 높은 수준의 계획서 도출 여부	15	40
		선행 연구결과물의 완성도 및 계획 대비 달성 정도	15	
	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	주관 및 참여기관(산·학·연)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의 유기적 구성	10	
사업비 및 사후관리	사업비 집행 적정성	계획된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 여부	10	20
	향후 활용 및 파급효과	해당 R&D 성공 시 도내 도심항공교통 산업 활성화 및 경제적 기여 가능성	10	
합 계			100	

5. (평가위원회 재평가)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“평가보류”로 판단된 과제는 평가 결과 통보 후 3주 이내 수행결과보고서 보완 또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

6. 제출서류 ※ 주관기업 우선 제출, 선정 시 참여기업(관) 추가 제출 안내 예정

구분	제출서류 목록
필수	① (서식1)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	② (서식2) 신용상태조회 동의서
	③ (서식3) 청렴서약서
	④ (서식4) 중복지원 금지사항 약약서
	⑤ (서식5) 개인정보이용(제공·조회) 동의서
	⑥ 사업자등록증
	⑦ 최근 3년(23~25년) 재무제표 * 25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(※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)
	⑧ 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
해당시	⑨ 공장등록증,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
	⑩ 회사소개서, 제품 홍보자료 등
	⑪ 지식재산권, 인증관련 : 특허, 벤처기업, 메인비즈, ISO등

IV. 신청방법 및 문의처

1. 신청양식 :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
2. 신청기간 : 2026. 2. 23.(월) ~ 2026. 3. 20.(금) 18:00까지
3.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
(재)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(www.gbtp.or.kr) →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
→신청서 작성 및 기타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
4. 문 의 처
 - 담당자 : 경북테크노파크 지역특성화추진실 최영동 연구원
 - E-mail 및 연락처 : ydchoi97@gbtp.or.kr, 054-437-9313

VI.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

1. 사전지원 제외 대상(공통운영요령 근거)

- ① 신청기업,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
- ② 기업의 부도, 자본전액잠식(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)
- ③ 국세·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- *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④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- *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⑤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,000% 이상(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1,000%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)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
 - * 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"BBB"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
 - *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 - *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
 - * 상기의 신용등급이 'BBB'에는 'BBB+', 'BBB', 'BBB-'를 모두 포함함
 - *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⑥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 또는 부적정"
- ⑦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, 간이과세자는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- ⑧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(신청서 등)가 미비하거나, 신청서 이외의 양식으로 제출하는 경우
- ⑨ 기타 본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2. 유의사항

- ①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(**지원금액의 현금 10%이상**, 단 비영리기관은 제외)이 있으며,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증빙내역(이체내역 등) 제출必
-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(대표이사, 과제책임자 등)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- 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)
- ④ 신청기업의 단순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
- ⑤ 제출서류가 허위,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
 - ※ 중복지원은 최근 2년 이내 동일기술에 대한 동일내용 지원 여부로 판단
- ⑥ 사업추진에 따른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
- ⑦ 사업비[사업비=지원금] 구성은 보조금, 수행기업이 부담하는 현금을 포함한 금액
 - **사업비는 별도의 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해야함**(민간부담금도 사업비 전용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)
 - 경북TP-컨소시엄 간 양자 협약으로 협약 체결
 - 장비구입 등 자산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비 계상 불가
 - 선정된 기업은 사업비 지급을 위해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필수(기업에 한함)
 - 민간부담금은 지원금의 10%이상을 현금으로 계상(기업에 한함)
 -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(기관 제외)
 -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기간 및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
 - 협약체결 → 민간부담금 입금(기업) → 사업비(보조금) 선지급(경북TP→기업/기관)
 - 자세한 사항은 선정 후 설명회를 통해 안내 예정
- ⑧ 사업비유용, 협약위배 등의 경우 사업비 환수
- ⑨ [중간점검 현장실태조사]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음
- ⑩ [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] 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발명기관(기업)의 소유로 함
- ⑪ [사후관리] 선정기업은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부터 3년간 기술개발결과로 인한 성과(매출, 수출, 고용 등)를 기관에 보고해야함